

# 예산총칙

2016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98,217,914	11,946,537
일반회계	350,058,835	10,501,765
특별회계	48,159,079	1,444,772
공기업특별회계	16,309,889	489,297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309,889	489,297
기타특별회계	31,849,190	955,476
수질개선 특별회계	22,758,364	682,751
주택사업 특별회계	2,417,559	72,527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900,629	27,019
자활기금 특별회계	1,762,323	52,87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2,366,318	70,990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1,014,454	30,434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479,321	14,380
기반시설 특별회계	31,339	940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18,883	3,566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958,318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국가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는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복구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